

부산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가합40176(본소), 2017가합46024(반소) 판결
[부당이득반환 ·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권

피고(반소원고) 1. B

피 고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박정미

변론 종결 2017. 7. 19.

판결 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7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반소와 관련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56,638,828원, 피고 C, D, E, F은 각 37,759,2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841,694,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2010. 9. 2.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2012. 3. 23. 검사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794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3.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자로서 피고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2014. 8. 21. 상속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H 외 1필지 지상 1 빌딩(철근콘크리트 구조의 9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상속지분 : 피고 B 3/13,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 각 2/13)에 따라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은 망인 사망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수령과 비용 지출 등의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

마. 한편, 상속재산인 망인 사망 당시의 부동산 및 주식의 내역은 별지 1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2017. 5. 24. 현재까지 별지 2 임대료 수입금 합계 1,349,892,060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별로 각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 B이 망인 사망 직후인 2010. 9. 12.부터 현재까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면서 차임 등을 취득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3/13지분을 상속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였고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차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2010. 9.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24.까지 원고에게 차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기초사실과 을 2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대부분 피고 B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그 외 달리 나머지 피고들이 임대차관계나 건물 관리 등에 관여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③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관리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하 '피고 자녀들'이라 한다)의 일치된 동의 아래 모친인 피고 B이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면서 차임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 자녀들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수령하거나 차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 자녀들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선의 점유자 항변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채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인 점, ②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점, ③ 민법 제201조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원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긍정함으로써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인한 일종의 특칙이라고 할 것인데, 상속재산의 과실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가액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이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를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상속인이 인지 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201조소정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 원고가 피고(반환의무자)가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반환의무자인 피고 B은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권리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참조).

3)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2010. 9. 12. 이후인 2012. 4. 23.에야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2014. 2. 13.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인지의 법률상 효과로 비로소 망인의 친생자가 되어 소급적으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인지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고들 이외에도 원고가 망인의 상속자이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 권리가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 자녀들이 피고 B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과실을 수취하도록 허용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 B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인지 판결 확정 이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공연, 평온하게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차임 중 원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에 대하여도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인지 판결이 확정된 2014. 2. 14.부터는 그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한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2014. 2. 13.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피고 B이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로서 적법하게 취득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부당이득 액수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중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부당이득액의 반환을 구하나,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상당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을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은 반환될 부당이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2.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5.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의 합계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682,964,060원이므로,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액은 그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05,071,393원(= 682,964,060원×2/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원고가 구하는 56,638,82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상계 항변 판단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채무 변제, 이 사건 건물 관리비용, 상속세 대납 등으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원고의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본다.

1) 상속채무 구상금 판단

가) 피고 B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금 채무 합계814,930,636원을 대신 변제하여 원고의 상속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B에게 위 금액의 2/13 지분 상당액인 125,373,944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나) 살피건대, 을 43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주장하는 관련 소송들은 대부분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이나 주식회사 L 등과 그 채권자들 간의 소송이므로 위 법인의 채무가 피고 B의 상속채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 B이 상속인으로서당사자가 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25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5499호 · 대전고등법원 2012나2369호)의 경우 채권자들과 임의로 합의하거나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파트 보증금 반환 관련 상속채무는 원고가 위 서울 동작구 M아파트 N호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을 43호증, 을 46호증의 1, 2, 을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상속재산이 아닌 본인의 금원으로 직접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이 피고 B에 게 귀속된 채권이거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 B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관리비용 등 판단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가) 내지 라)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 항목별로 판단한다.

가) 취 · 등록세

을 3호증의 2, 10호증의 1, 을 34호증, 35호증의 1, 36호증의 1, 2, 3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13 지분이 전등기, 2014. 7. 2. 망인 소유였던 부산 해운대구 0아파트 P호(이하 'O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13 지분이전등기, 2015. 7. 2. 부산 해운대구 Q외 4필지(이하 'R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13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피고B이 2011. 3. 29.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 · 등록세 합계 91,036,360원(=64,663,470원 + 26,372,890원), 2011. 3. 29. O 아파트에 관한 취 · 등록세 합계 9,543,200원(= 2,899,200원 + 6,644,000원), 2011. 3. 30. R동 토지에 관한 취 · 등록세 합계 1,814,820원(= 255,200원 + 1,559,620원) 등 합계 102,394,38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납부한 취득세 등 102,394,380원 중 원고의 취득비율에 해당하는 14,879,287원(=91,036,360원×2/13+(9,543,200원+ 1,814,820원)×1/13)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피고 B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위 14,879,2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 등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을 8, 10호증의 2, 3, 을 35호증의 4, 3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3. 30. 법무사비용 4,837,136원1), 등기신청수수료 220,000원, 2011. 3. 31. 법무사비용 571,161원, 380,774원, 380,774원, 380,774원을 지급한 사실, O 아파트에 관하여 2011. 3. 30. 법무사비용 1,054,623원2), R동 토지에 관하여 452,729원3) 등 합계 8,277,97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6,344,488원으로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 B이 납부한 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 중 원고의 취득비율에 해당하는 998,586원(=5,737,136원×2/13+(1,054,623원+452,729원)×1/13)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을 피고 B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998,5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재산세 등

을 4 내지 6, 을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2010~2014년 재산세 13,060,860원, 8,452,710원, 3,005,740원(2010. 9. 30. 납부), 3,600원(2010. 11. 15. 납부), 1,109,880원(2010. 11. 30. 납부) 등 합계 25,632,790원을 납부한 사실, O 아파트에 관한 2011~2014년 지방세 6,092,460원, 148,120원, 148,120원 합계 6,388,7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434,944원(=25,632,790원×2/13+6,388,700원×1/13)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기타 비용

① 환경개선부담금 : 을 7호증의 1, 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년~2015년도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1,993,8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6,780원으로 인정한다.

② 교통유발부담금 : 을 7호증의 2, 을 11호증의 1, 을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년~2016년도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3,277,8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관리인 급여 및 관리인 퇴직금 :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급여 월 100만 원을 2010. 9.부터 2017. 5.까지 81개월간 지급하였고 관리인 퇴직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④ 각종 공사비용 :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도배공사, 전기공사, 보일러 교체, 방수공사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9, 25, 26, 39, 5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관리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합계 35,451,7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차임 이외에 별도로 금원을 일부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관리비 내지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공사비용에 충당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이 피고 B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⑤ 부동산중개수수료 : 을 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로 2017. 4. 7. 3,102,000원, 4. 17.부동산중개수수료 308,000원 합계 3,4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그 외 부동산중개수수료 10,100,0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⑥ 세무사 기장료 :을 12, 13호증의 1 내지 164), 을 18호증의 10, 16,20, 29, 37, 415), 을 22호증의 1 내지 36), 을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 및 상속세 신고 등을 위하여 세무사 기장료로 2010. 12. 21.2,860,000원, 2011. 3. 25. 55,000,000원, 2016. 5.분까지 세무사 기장료 지급액1,800,000원7) 등 합계 59,66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⑦ 부가가치세 :을 14, 24, 27,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사업에 대한 2010년도~2016년도분 부가가치세 합계64,438,420원8)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엘리베이터 점검비 :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점검비4,0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8호증의 기재,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 B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재 관리인이 관리하기 시작한 후 안전관리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는 임차인들이 부담한다고 자인한 점, 이 사건 건물 차임 이외에 별도로 관리비 등을 받아 이를 위 비용에 충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B이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⑨ 명도소송 변호사비용, 가처분비용, 집행비용 :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각종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전 즉,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비롯된 이 사건 건물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송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 관련 비용이 이 사건 건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부분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 보증금반환채무 중 반환금액 :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235,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26,을 2호증의 30, 을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S과 사이에 2012. 3. 19. 이 사건 건물 T호, U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7. 3. 29.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S에게 미납 연체차임 1,939,060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98,060,9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125,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98,060,940원의 2/13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지출한 금원 중 원고의 취득 비율에 해당하는 취 · 등록세 14,879,287원, 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 998,586원, 재산세 등4,434,944원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타 비용(166,395,590원 = ① 환경개선부담금1,986,780원 + ② 교통유발부담금 3,277,870원 + ⑤ 부동산중개수수료 3,410,000원 +6 세무사기장료 59,660,000원 + 10 보증금반환채무 반환금액 98,060,940원) 중 원고의 취득비율인 2/13 지분에 해당하는 25,599,321원(= 166,395,590원×2/13,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45,912,13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납부한 상속세 본세 합계액이 3,984,055,790원이므로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612,931,660원을 부당이득 내지 구상금으로서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을 23호증, 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3. 30. 2011년도 상속세 353,542,340원, 2011. 11. 30. 2010년도 상속세 2,375,734,180원, 2012. 4. 30. 2010년도 상속세 1,110,151,380원, 2016. 9. 28. 2016년도 상속세 144,627,890원 등 합계 3,984,055,79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의 총 상속재산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동법 제13, 14조), 위 상속세 합계액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 B이 단독소유하게 된 부동산(R동 토지, V동 토지, 창원 토지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상속지분(2/13)과 O 아파트 및 R동 토지에 관하여 마친 상속지분(1/13)이 다른 사실, 상속세는 상속인의 개인적 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상속재산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시에 함께 청산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과 원고 사이에는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가 서울가정법원 2017노합33호로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금원 전액이 피고 B에게 귀속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1) 위에서 살펴 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56,638,828원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45,912,138원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이 성립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은 모두 2017. 5.경까지 발생한 차임과 비용 등에 관한 채권으로서 각 그 무렵 최종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7. 5. 31.이 상계적상일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10,726,690원(= 56,638,828원 - 45,912,138원)이 남게 된다.

2)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7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일다음날인 2017. 6. 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반소 청구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위 제2의 다항 기재 상계 채권에 관하여 다시 반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반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 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과실인 차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위 피고가 부담한 상속세, 이 사건 건물 관리비용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망인의 상속채무 등을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관계의 내용이나 발생원인에서 망인의 사망(상속)을 기초로 하고 있어 견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 B이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을 본소 제기시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점, ③ 반소 청구의 소송물은 위 항변의 자동채권으로 결국 주장 채권간의 상계를 통해 당사자들의 채권채무 관계가 보다 간명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소송절차를 현저히

자연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반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 판단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각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한편, 동일한 각 채권에 관하여 다시 이를 반소로 청구하고 있으나, 각 채권에 대한 판단 및 일부 인정되는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음은 위 제2의 다항과 라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의 피고 자녀들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김유성, 판사 배준익

별지 1

피고들의 상속재산 명세

재산종류	소재지	수량
토지	창원시 의창구	226.8
		1716.6
		1438.8
		1204.8
		973.8
		362.4
		400.2
		166.2
		162
		460.8
		337.8
		228.6
		375.6
		9
		271.8
	부산진구	7
	해운대구	169.5
		9.5
		34
공동주택	해운대구	
상업용건물	진구	
주식	주	60,000
현금		
	은행	
	기업은행	
	은행	
	주	
	별당 현금잔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삽입액	
	사전증여재산(현금)	
	사전증여재산(공동주택)	
	계	

별지 2

[표] 피고 B의 임대 수익

호수	임대차계약 기간 (2014. 2. 14. ~ 2017. 5. 24.)	임차인	월 차임(원)	개월	합계(원)	판단 근거
W호	2012. 6. ~	X	2,000,000	39	78,000,000	을 2-2
Y호	2010. 10. ~ 2014. 10.	Z	600,000	9	540,000	을 2-3
	2014. 11.		380,000		380,000	(19일본 자인)
	2014. 11. ~	AA	850,000	10	850,000	을 2-4
	2016. 7. 14. 정산		8,500,000		8,500,000	을 2-4 및 2016. 9. 29.자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4면
AB호	망인 사망 전 ~	AC	500,000	39	19,500,000	을 2-5
AD호	망인 사망 전 ~	AE(AF지과)	1,000,000	41	41,000,000	을 2-6
AG호	2013. 6. ~	AH	600,000	34	20,400,000	을 2-8
	2016. 7. 14. 정산		1,800,000		1,800,000	을 2-8 및 2016. 9. 29.자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4면
AI호	2014. 5. 26. ~	AJ	500,000	25	12,500,000	을 2-10
	2016. 11. 8.		1,500,000		1,500,000	다툼 없음
	2016. 11. 22., 2017. 1. 23., 2017. 3. 28.		700,000	3	2,100,000	다툼 없음
	2014. 5. 정산	AK 보증금	5,000,000		5,000,000	을 2-9
AL호	2012. 6. ~ 2016. 10. 21.	㈜ AM (대표이	1,300,000	24	31,200,000	을 2-12

		사 AN)				
	2016. 10. 14.		2,600,000		2,600,000	2,860,000원 중 부가가치세 260,000원 공제
	2016. 11. 23.,		1,300,000		1,300,000	다툼 없음
	2017. 2. 23., 2017. 4. 28.		4,290,000	2	8,580,000	다툼 없음
AO호	망인 사망 전 ~	AP (AQ)	500,000	38	19,000,000	을2-13 2014. 3. 3.자 1,000,000원은 2014. 2.분 연체차임 합한 2개월분이므로 2014. 2. 14. 이후 이득액은 500,000원으로 산입
AR호	2013. 11. ~	AS	1,200,000	37	44,400,000	을 2-15
AT호	2014. 5. ~	AU	700,000	5	3,500,000	을 2-17
	2015. 2. 정산		3,500,000		3,500,000	다툼 없음
	2015. 3. 16. ~		600,000	28	16,800,000	다툼 없음
AV호	2014. 2. ~	AW	500,000	39	19,500,000	을 2-19
AX호	2014. 4. ~	AY(AZ)	1,300,000	36	46,800,000	을 2-21
BA호	2013. 12. ~	BB	700,000	31	21,700,000	을 2-23
	2016. 12. 12., 2017. 1. 6.		1,400,000	2	2,800,000	2개월분 차임
BC호	2013. 12. 21. ~	BD	550,000	35	19,250,000	을 2-25

	2015. 6. 21.		1,100,000		1,100,000	2개월분 차임
T호, U호	2012. 3. 19. ~	S	각 1,000,000 (합계 2,000,000)	33	66,000,000	을 2-26, 2-30
	2017. 3. 29. 정산		1,939,060		1,939,060	을 2-26, 2-30, 을 33에 의하여 2017. 3. 29. 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한 미납 연체 차임이므로 임대수익으로 인정
BE호	2013. 7. ~	BF	700,000	38	26,600,000	을 2-28
BG호	2011. 10. ~	BH	500,000	36	18,000,000	을 2-29
BI호	2014. 4. ~ 2014. 12.	BJ	700,000	2	1,400,000	을 2-32
	2015. 1. ~	BK	700,000	2	1,400,000	을 2-33
	2015. 1. 5. 정산		4,200,000		4,200,000	을 2-33, 2016. 4. 15.자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 령결과 121면
	2015. 3. 18., 2015. 6. 25.		1,400,000	2	2,800,000	2016. 6. 이사, 현재 공실
	2015. 12. 25.		4,200,000		4,200,000	다툼 없음
BL호	2013. 11. ~	BM	500,000	29	14,500,000	을 2-35
BN호	2012. 3. ~	BO	1,200,000	38	45,600,000	을 2-36
BP호	망인 사망 전 ~	BQ	500,000	31	15,500,000	을 2-37
	2014. 8. 5., 2015. 8. 7., 2016. 8. 5.		800,000	3	2,400,000	다툼 없음
	2017. 2. 7.		265,000		265,000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입금액이라고 다투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기타		BO			4,620,000	이하 다름 없음
		BR			2,800,000	
		BS			500,000	
		BT			1,000,000	
		㈜ BU			5,720,000	
		BV			2,420,000	
		BW			27,000,000	
		BX			500,000	2016. 7. 7. 입금내역(2016. 9. 29.자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 령결과 4면)만으로는 차임이라는 증거 없으므로 기각
합계					682,964,060	

1) 4,837,136원 = 본인부담금 2,443,679원 + 증지 220,000원 + 열람 79,200원 + 서기로등
수수료 1,903,870원 + 부가세 190,387원

2) 1,054,623원 = 총 금액 10,597,823원-등록세 2,416,000원-교육세 483,200원-취득세 및

농특세(6,040,000원+604,000원)

3) 452,729원 = 총 금액 2,267,549원-등록세 212,670원-교육세 42,530원-취득세 및
농특세(1,417,840원+141,780원)

4) 1,155,000원 = 55,000원×21회

5) 330,000원 = 55,000원×6회

6) 315,000원 = 55,000원×5회 + 40,000원

7) 각주 4) 내지 6)을 합산한 금액

8) 위 금원을 합산하면, 79,253,320원이나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64,438,420원으로 본다.